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 규정

<제정 2024.09.05.>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 학칙 제55조의2(학사학위취득 유예)에 의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 "학사학위취득 유예(이하 "유예"라 한다.)"란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.
 - ② "학사학위취득 유예자(이하 "유예자"라 한다.)"는 "유예자" 학적으로 별도 관리되는 학생을 말하며,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제3조(신청자격)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.
 - ① 학칙 제6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
 - ② 졸업사정 이후 졸업예정자로 확정된 자
 - ③ 재학연한이 1년 이상 남은 자
- 제4조(신청 및 절차) ① 제3조의 자격을 충족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유예할 수 있다.
- 제5조(유예기간) 유예는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1회 할 수 있다.
- 제6조(유예의 조건) ① 유예자는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.
 - ② 유예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, 학위는 취소학기 학위수여일에 수여한다.
- 제7조(학적관리) ① 유예자의 학적은 재학생과 구분하여 관리한다.
 - ② 유예자 학적은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**제8조(증명서발급)** 유예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수료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만 발급이 가능하다.
- **제9조(시설사용 및 사용료)** ①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.
- **제10조(학위수여)** 유예자의 학위는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의 학위수여 일에 수여한다.
- 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